貿易學會誌 제48권 제2호
2023년 4월 pp.197~216
https://data.doi.or.kr/10.22659/KTRA.2023.48.2.197

논문접수일 : 2023. 04. 06
심사완료일 : 2023. 04. 18
게재확정일 : 2023. 04. 21

중소기업 전자상거래 수출통관 원활화에 대한 연구 - 위험관리를 중심으로

Trade Facilitation for SME's E-Commerce Export - focusing on Customs' risk management

이 지 수* Ji-Soo Yi

목 차

Ⅰ. 서 론
Ⅱ. 선행연구
Ⅲ. 위험관리 기반 수출통관제도 사례 분석틀 구성
Ⅳ. 위험관리 기반 전자상거래 수출통관 및 쟁점
Ⅴ.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국문초록

이 연구는 중소기업 전자상거래 수출통관을 세관의 위험관리 절차에 중심을 두고 재검토하여 중소기업 전자상거래 수출 원활화를 위한 위험관리 절차에 요구되는 개선점과 관세행정에 갖는 시사점을 탐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위험관리에 대한 선행연구에 바탕을 두고 우리나라 전자상거래 수출통관제도의 현황과 쟁점을 분석하는 단일 사례연구 방법을 택하여 세 가지 연구 문제를 살폈다. 첫째, 우리나라 관세행정의 수출통관 위험관리 제도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둘째, 전자상거래 수출통관 원활화의 주요 쟁점은 위험관리 측면에서 무엇을 의미하는가? 셋째, 이러한 연구 결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중소기업의 전자상거래 무역 원활화를 위한 수출통관 위험관리의 개선점과 시사점은 무엇인가?

연구 결과에서는 중소기업 수출통관 위험관리에서 법규준수도 접근법의 중요성을 확인했다. 관세당국은 중소기업이 수출과 상대국 시장에서 겪는 애로에 관해 깊은 관심과 이들이 부담하는 법규준수 실패 위험에 대한 새로운 추론 방법의 개발, 이에 근거한 위험관리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주제어〉 전자상거래, 중소기업, 수출통관, 위험관리, 법규준수

* 단국대학교 무역학과 교수, Email: jisoo.yi@dankook.ac.kr

Ⅰ. 서론

코로나 팬더믹은 중소기업[1]이 전자상거래 수출입을 크게 확대하는 계기가 됐다. 디지털 플랫폼은 수출입 거래 비용과 정보 비대칭에서 오는 불확실성을 크게 개선했고, 이러한 변화는 영세 사업자들이 과거 어느 때 보다 쉽게 수출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했다.(Taneja, 2013) 과거 우리나라의 전자상거래 수출은 수입과 비교해 매우 미미했지만, 팬더믹을 지나면서 수출금액이 크게 확대되어 2021년 말 전자상거래 수입과 격차가 3배까지 줄었다.(한국무역통계정보포털, 2022) 이렇게 확대된 전자상거래 수출의 77%를 중소기업이 담당하면서 전자상거래 수출이 중소기업의 성장전략으로 유효하게 인식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전자상거래가 중소기업 수출에 기여하는 바는 아직 미미하다. 2021년 현재 중소기업 전체 수출금액의 0.57% 만이 전자상거래를 통해 이뤄지고 있다. (Kim, 2022) 전자상거래를 위한 디지털 생태계가 팬더믹 기간 동안 활성화되면서 전자상거래는 중소기업이 세계시장에 판매할 수 있는 더 쉬운 길이 만들어지기는 했지만, 그 길에는 아직 중소기업이 전자상거래를 통해 성장하기 위해 넘어야 할 장애가 많다. 통관절차에 대한 비전문성과 자원 부족이 가장 흔히 지적되는 장애 중 하나다. (WTO, 2018)

중소기업은 대부분 통관 경험이 적고 수출 자체가 간헐적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수출역량으로 내재화하기 어렵다. 더구나 중소기업의 영세성과 부족한 인적, 물적 자원은 상황 개선을 더 어렵게 한다. 이러한 역량 부족은 빈번한 신고 오류로 이어져 세관 위험관리 체계의 효율을 떨어뜨리는 문제로 확대된다. 이로 인해 고위험화물 추적이 어려워지고, 저위험 화물에 과도한 통관 인력이 투입되어 지연과 비용, 상대국에서 수입통관에서의 어려움 등으로 중소기업은 수출 경쟁력을 쉽게 잃는다. (WCO and WTO, 2022)

'수출'은 중소기업이 경제적으로 성장하는 발판일 뿐만 아니라 글로벌 수준의 경쟁력을 갖게 하고, 국내 제조기반을 확충하고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한다는 면에서 중요하다. (Golovko and Valentini, 2011) 이에 따라 중소기업 수출을 장려하는 국가적 요구가 높아서, 전자상거래 위험관리에 관한 연구는 주로 수입통관을 다뤘고 수출통관에 대해서는 크게 논의되지 않았다. 그러나 관세행정에서 '위험관리(Risk management)'는 관세법을 위반할 위험뿐만 아니라 관세행정이 무역 원활화에 실패할 위험까지 포함한다.(Widdowson, 2005) 다시 말하자면 중소기업 전자상거래 수출을 방해하는 위험 요소에 관한 체계적인 연구 없이는 관세행정의 위험관리, 그리고 행정효율 향상을 통한 중소기업 수출 원활화는 성공하기 어렵다.

이러한 진단에 기반하여 이 연구는 중소기업 전자상거래 수출통관을 세관의 위험관리 절차에 중심을 두고 재검토하여 중소기업 전자상거래 수출 원활화를 위한 위험관리 절차에 요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는 중소기업을 평균매출액 또는 연간매출액이 업종별로 400억에서 1,500억원 이하이고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인 기업으로서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있는 기업으로 정의한다.

구되는 개선점과 관세행정에 갖는 시사점을 탐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연구는 무역 원활화와 위험관리에 대한 선행연구에 바탕을 두고 우리나라 전자상거래 수출 통관제도 사례를 분석하는 단일 사례연구 방법을 택했다. 사례를 분석을 위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먼저, 우리나라 관세행정의 수출통관 위험관리 제도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둘째, 전자상거래 수출통관 원활화의 주요 쟁점은 위험관리 측면에서 무엇을 의미하는가? 셋째, 이러한 연구 결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중소기업의 전자상거래 무역 원활화를 위한 수출통관 위험관리의 개선점과 시사점은 무엇인가?

단일사례 분석 방법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이 연구에서는 관련된 선행연구, 법령, 국제기구의 지침과 보고서, 연구자료와 같이 다양한 자료원으로부터 도출된 결과를 수출기업과 관세사, 특송업체에 대한 면접을 통해 보완했고, 수집된 자료 간 패턴 매칭을 통해 결론을 도출했다. 이러한 연구는 기존의 무역원활화와 위험관리 이론을 전자상거래 수출 통관 사례를 통해 검증해 본다는 점에서 학문적인 의의가 있다. 또한 중소기업 수출 원활화를 위한 요구를 반영하는 전자상거래 수출통관 절차의 개선점과 시사점을 찾아본다는 점에서 실천적 의의가 있다.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다음 장에서는 통관절차 상의 무역원활화와 위험관리, 전자상거래 무역원활화에 대한 선행연구를 정리했다. III 장은 이 연구에 적용된 구체적인 방법론을 담고 있다. IV장은 연구결과를, V장에서는 연구결과를 요약하고 시사점을 정리하는 것으로 마무리 한다.

Ⅱ. 선행연구

1. 무역원활화의 근간, 위험관리

무역원활화(trade facilitation)는 학문적으로 그 범위나 정의가 명확하지 않지만 무역과 물류, 관세행정 분야에 광범위하게 논의되고, 적용되는 개념이다. Staples (1998)는 무역원활화가 무역 아젠다를 입법이나 규제의 문제에서 보다 실무적이고 행정적인 '이행' 단계로 심화 시키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이와 같이 무역원활화에 대한 학문적 연구는 무역원활화 정책이 이행되는 단계에서 어떠한 경제적 영향을 주는지 측정하는데 중심을 두고 있다. 예를 들어 Roy(2005), Walkenhorst and Yasui (2009), Wilson, J. S., Mann, C. L., and Otsuki, T. (2004)는 무역원활화 정책으로 이뤄진 항만의 개통이 물품의 이동과 국경간 거래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 정량적으로 평가한다.

실천적인 분야에서 무역원활화 개념은 무역원활화 정책을 제도와 절차, 협력과 협정의 체결로 구체화하는데 적용됐다. 특히 WTO 회원국의 무역원활화에 대한 높은 열망은 무역원활

화의 개념을 2014년 무역원활화 협정(Trade Facilitation Agreement)으로 구체화 시켰다. (Neufeld, 2014) 이 협정은 기존의 GATT 협정에서 다루던 무역원활화와 관련된 다양한 조항을 구체화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었는데, 제7조 제4항에서는 '위험관리 (risk management)' 시스템을 바탕으로 세관의 통제와 위험평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2)]

Wilcox-daugherty et al. (2018)는 위험관리가 사후심사나 안전관리우수공인업체 (Authorized Economic Operator)[3)]제도를 포함한 통관절차와 관련된 다양한 무역원활화 조치의 근간이 된다고 설명한다. 위험관리는 세관의 조사나 검사과정의 원활화를 위해 광범위하게 적용되는 원칙으로 세관의 통제는 고위험화물에 최대한 집중시키고, 저위험 화물은 신속하게 반출할 것과 세관 통제 대상은 적절한 기준에 따라 이뤄지는 위험평가에 바탕을 두고 선별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공공행정 분야에서 '위험관리'를 위험이 높다고 평가되는 곳에 자원을 집중하고 위험이 낮은 분야는 통제 대상 스스로가 법과 규제를 준수하도록 하여 행정자원의 효율을 높이는 위험 기반 통제라고 정의하는 것과 맥락을 같이한다. (Power, 2004)

Widdowson (2005)의 지적과 같이 관세행정에서 위험은 관세법 위반 위험 뿐만 아니라 무역원활화에 실패의 가능성까지 포함한다. WCO (2012)는 관세행정에서 현대적인 위험관리 기법은 법규준수도 접근법(compliance management approach), 즉 고객서비스와 같은 접근법을 취해야 한다고 말한다. 기업 스스로 법규를 준수하는 역량을 강화하여 세관의 통제를 최소화하는 이 접근법은 수출입 기업 대상의 교육 및 인지도 개선 캠페인, 기술 지원 및 자문, 컨설팅 및 협력, 결정례 및 판례의 공표, 공식적인 이의신청제도의 도입과 같은 제도 개선을 통해 실현된다.

2. 세관 통제를 위한 위험정보의 수집과 분석

Geourjon and Laporte (2005)는 세관 통제에서 정보 수집과 체계적인 반출 전 선별 검사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세관 통제는 (1) 통제 대상이 되지 않는 녹색 채널(green channel), (2) 심도 있는 서류 검사가 이뤄지는 황색 채널(orange channel), (3) 심도 있는 서류 검사와 물리적 검사가 함께 적용되는 적색 채널(red channel)의 3단계로 나눠 적용된다. 즉, 수집된 정보를 기초로 위험 기준을 사용해 통제 대상을 선별하고, 위험도를 분석한 후 위험도에 따라 통제절차를 적용한다. 이 과정에 사람이 개입할수록 부패와 실수, 도덕적

2) WT/L/940. Annex to the Protocol Amending the Marrakesh Agreement Establishing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Agreement on Trade Facilitation.

3) 안전관리우수공인업체, 성실무역업체(Authorized Economic Operator, AEO)는 국제물류 이동에 관여하는 업체 중 일정요건을 갖춘 것으로 관세청이 인증한 기업을 말한다. AEO로 인증 받은 기업이 수출입하는 물품에 대해 세관 검사가 최소화되거나 신속한 통관 등의 혜택을 받는다. AEO제도는 WCO SAFE Frameworks에 기반을 두고 도입된 제도이다. (관세청, 2020)

해이의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 위험평가 기준에 따라 자동으로 통제 대상 화물을 선별하는 시스템을 사용할 것을 권장한다.

세관 통제를 위한 정보는 세관에서 수집한 신고자료는 물론 인접국 세관, 수출입 요건 확인기관[4]과 민간부문 등 다양한 자료원을 통해 수집된다.(WCO, 2012) 이들 데이터는 세관의 데이터베이스에 통합 저장되거나 적어도 세관이 접근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어 위험관리 절차에 사용될 수 있어야 한다. 이 밖에도 우편물이나 탁송품에 대한 우체국과 특송업체의 정보, 선적 전 화물 자료 등은 위험관리의 정확성을 높여준다. 이러한 자료를 통합 관리 할 수 있도록 세관은 필요한 기관과 양해각서나 업무협약을 맺어 적절한 권한을 보유하여야 하며, 첨단 정보기술을 도입을 통해 다양한 수출입 거래형태의 진화에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위험도에 따른 선별 검사와 통제를 구성하기 위해서 다양한 통계적 추론 방법을 바탕으로 '위험'을 파악한다. Widdowson(2005)는 4 가지 추론 방법을 혼합하여 적용하는 접근법을 소개한다. (1) 수입통관 기록이 없어 통관 데이터에 따라 위험 평가가 되지 않는 새로운 수입신고에 대해 검사하는 방법, (2) 통계적 추론방법에 의해 결정되는 객관적인 위험 평가 기준에 근거하여 사후 데이터 베이스 분석을 통한 위험평가, 거래경로, 상품, 운영인에 대한 데이터를 기준으로 잠재적인 사기 수준을 0에서 1 사이 수치로 평가하여 검사하는 방법, (3) 수입금액, 검사 받지 않은 기간 등 거래 특성에 따라 반출 보류와 검사하는 접근법, (4) 검사 패턴의 예측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무작위 검사 방법이 그것이다.

Aven (2017)이 설명하는 것과 같이 파악된 개별 위험은 일반적으로 발생가능성 (likelihood 또는 probability, 보통 P 값으로 지칭)과 결과의 심각성 (consequence, 보통 C 값으로 지칭)의 두가지 차원으로 분석하고 두 값을 사용해 예상치 (expected value, E 값)를 얻는다.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이러한 '정량적 위험평가 (Quantitative Risk Assessment, QRA)' 방법의 문제는 C 값이 실제 결과의 심각성을 제대로 예상하지 못하거나, P 값의 근거 지식이 평가자마다 다를 수 있어서, 위험성을 부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다는 점이다.

3. 전자상거래 수출 통관의 무역원활화와 위험관리

Song, Yan and Zhang (2019)은 국경간 전자상거래에 많은 위험 요소가 있다고 지적한다. 운송 소요시간을 예측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반품절차가 복잡하고 가격이 불투명하며,

4)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은 요건 확인기관을 Partnering Government Agencies (PGAs) 라고 부르는데, 수출입 국경관리를 위해 품목별 수출입 요건과 규제를 입법하고, 세관을 통해 집행을 위임하는 다수 정부 기관을 뜻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약 31개 요건 확인기관이 관세청의 통관 포털인 유니패스(UniPass)를 통해 수출입 정보를 교환하고 있다. 그러나 관세청이나 세관은 이들 데이터에 대해 제한적인 접근 및 통합 권한을 갖고 있다. (이은재, 이지수, 2021)

통관으로 인한 지연과 운송 추적이 되지 않는 일이 빈번하다. 또 수출자와 수입자 간 정보 비대칭, 국가 간 상이한 법체계, 언어, 높은 운송비용 등이 위험 요인이 된다. 이 요소는 다양한 경로로 수출자가 법규를 어기거나, 수입국에서 통관 지연을 겪고 비용을 소비하게 한다. 그렇지만 이러한 전자상거래 수출통관에 존재하는 수출자의 법규 위반 위험을 어떻게 추론해야 하는지에 대한 연구 자료는 드물다.

세계관세기구(World Customs Organization, WCO)는 2016년 46개 회원국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고, 이를 통해 전자상거래 물품 통관에 여러 나라의 세관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한다(WCO, 2017) 우편이나 특송물품 신고서류는 부정확하고 오류 정보가 많다. 또 전자상거래 수출입업체는 수출입 경험이 적어 통관기록에 기반한 법규준수 관리가 어렵다. 이로 인해 선별검사의 효율이 떨어지고 세관공무원의 개입이 많아져 전자상거래 수출입을 감당하기 어렵다. Barnay, Davis and Zaidi (2022) 역시 국경간 전자상거래 원활화를 위해서 세관은 신고서를 통해 보다 정확하고, 충분한 정보를 얻을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특송업체나 우편취급기관과 협력해야 하고, 또 세관의 검사인력과 역량을 확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경 간 전자상거래 원활화를 위해 국제 기구와 연구자들은 소액면세한도(de minimis threshold)와 간소한 통관제도(immediate release, 또는 즉시반출제도)를 적용하는 조치를 도입할 것을 권장한다. '소액면세한도'는 수입물품 중 관세의 면제, 최소한의 통관절차, 간이신고'를 적용하는 과세가격 한도를 정하는 제도이다.(Tavengerwei, 2018) 소액 물품이라도 세관의 통관 행정비용은 어느정도 동일하기 때문에 세수보다 높은 행정비용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면세를 적용하고 위험관리 수준을 낮추는 것이다.(United Nations, 2012) 간소한 통관제도 또한 국경 간 전자상거래 급증에 대한 해결책으로 제시됐다.(Elliott and Bonsignori, 2019; Sowinski, 2017; WCO, 2018a, 2018b) 이 제도는 저가 특송 물품에 대해 신속한 통관 절차를 적용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소액면세'는 관세행정당국에는 세수의 감소를 의미하기 때문에 그 한도가 국가의 사정에 따라 차이가 많다.(WCO, 2015) 또 수입국내 판매자들이 분할 수입이나, 저가신고 등을 통해 관세 탈루가 늘어날 수 있고, 간이한 통관절차가 적용되면 불법 화물에 대한 정보가 불충분해 세관의 통제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자상거래 화물의 폭증에 따라 많은 국가의 세관이 소액면세와 간소한 통관제도를 피하기 어려워졌다.(WCO, 2015) WCO에서는 소액면세와 간소한 통관제도를 택한 국가의 관세당국이 경쟁력을 유지하는 것을 돕기 위해 두 가지 모델을 제안한다. 첫째는 비거주자인 판매자, 즉 수출자를 수입국 관세당국에 등록시키고 이들이 구매자인 수입자로부터 관세를 징수해 수입국 세관에 송금하도록 하는 '판매자 징수 모델 (vendor collection model)' 이다. 두 번째는 판매자 즉 수출자가 관세 징수와 송금에 있어서 중개자에게 의지하는 '중개자 징수 모델 (intermediary collection model)'이다. 이 모델에서 3개

그룹의 중개자가 관세 징수 를 중계하도록 고려되고 있는데 첫째 우편 서비스 제공자, 특송업체나 운송인, 둘째 전자상거래 플랫폼사업자나 전자상거래 업체, 세번째 금융 중개자로서 전자 결제 서비스 제공자가 고려되고 있다.

Ⅲ. 위험관리 기반 수출통관제도 사례 분석틀 구성

이 연구는 무역원활화 이론의 근간이 되는 위험관리에 관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한국 전자상거래 수출 통관 사례를 분석하는 단일사례연구 방법을 채택했다. 전자상거래에 적용되는 위험관리제도를 선행연구, 관련 법령, 국제기구의 지침서 등을 통해 검토하고 분석하는 체계적 문헌고찰방법을 사용했다. 관세청의 보고서 및 지침서,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5]를 비롯한 다양한 자료원을 사용했고, 연역적 코딩(a priori coding) 방법을 통해 자료분석과 패턴을 도출했다. (Creswell, 2016)

통관절차에서 세관 위험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공개되고 있지 않아[6] 이 연구에서는 국내법령과 고시, 안내문과 지침서와 같은 공개자료에 기초하여 위험관리 절차를 확인했다. 관세법과 관세법시행령 중 전자상거래물품, 탁송품, 우편물에 대한 조문을 바탕으로 '전자상거래물품 등의 특별통관 절차에 관한 고시[7]'와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8]'를 중심으로 살폈다.

〈그림 1〉 분석 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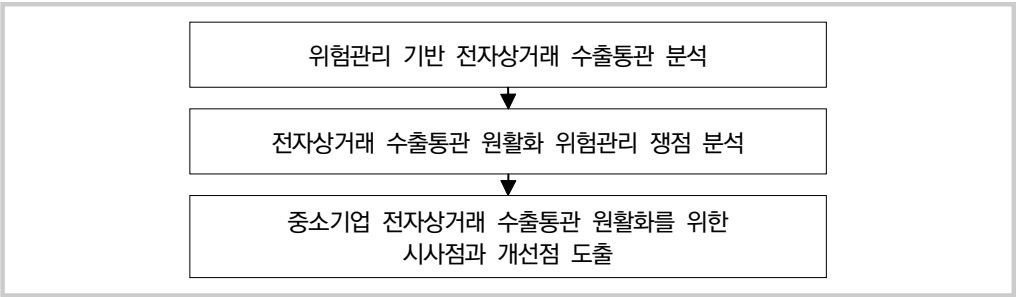

자료: 저자작성

5)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관세청고시 제2023-7호

6) 예를 들어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6조 검사대상 선별에 대한 조문은 수출신고물품에 대한 검사대상 선별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수출물품 선별검사에 관한 훈령'을 따르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관세청 포털에 따르면 '관세국경 위험관리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 훈령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법률' 제9조제1항제5호에 따라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로서 비공개되고 있다.
(https://www.customs.go.kr/kcs/cm/cntnts/cntntsView.do?mi=3070&cntntsId=806)

7) 전자상거래물품 등의 특별통관 절차에 관한 고시 [관세청고시 제2020-44호, 2020.11.27., 일부개정]

8)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관세청고시 제2022-19호, 2022.5.12., 일부개정]

수집된 자료의 분석을 위해 이 연구에서는 〈그림 1〉과 같이 우리나라 수출통관에서 위험관리 절차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전자상거래 수출통관에 제기되는 새로운 쟁점들을 다시 분석한 후 이로부터 시사점과 개선점을 도출하는 다층적인 분석 과정을 거쳤다. 선행연구를 통해 세관 위험관리 체계를 〈그림 2〉과 같이 화물의 위험평가에 기초를 두고 위험도에 따른 통제절차를 구성하거나, 법규준수도를 관리하는 접근법으로 운영된다고 보았다. 화물의 위험평가 절차는 위험정보를 수집하고 검사를 위한 선별 체계로 세분된다. 이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전자상거래 수출통관에서의 위험관리를 분석하는데 있어서 선행연구에서 제기된 위험관리 절차 분석 패턴을 기반으로 살폈다.

〈그림 2〉 위험관리 기반 수출통관 분석 패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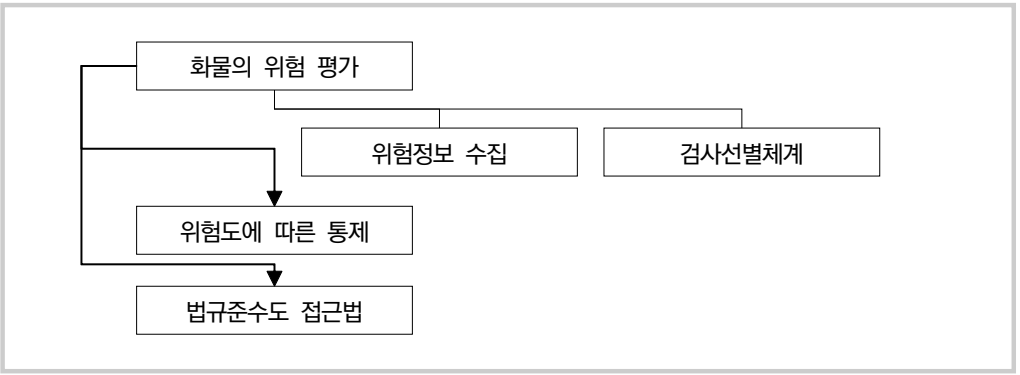

자료: II장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저자작성

II 장 선행연구의 3절에서는 전자상거래 수출통관 위험관리에 제기되는 새로운 쟁점 (위험정보의 수집과 무역원활화를 위해 적용되는 소액면세한도, 간소한 통관제도, 수입국의 판매자・중개자 징수모델의 도입)을 다뤘다. 이 연구는 우리나라 전자상거래 수출통관 원활화를 위한 위험관리에 있어서 쟁점을 분석하기 위해 〈그림 3〉과 같은 분석틀을 적용했고, 〈그림 2〉와 〈그림 3〉의 분석을 통해 시사점을 도출했다. 제도와 절차를 사용하는데 있어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이해하기 위해 중소기업 3개사에 대한 인터뷰와 관세법인 2개사에 대한 인터뷰를 사용했다.

〈그림 3〉 패턴 매칭을 통한 전자상거래 수출통관 원활화 위험관리 쟁점 분석틀 도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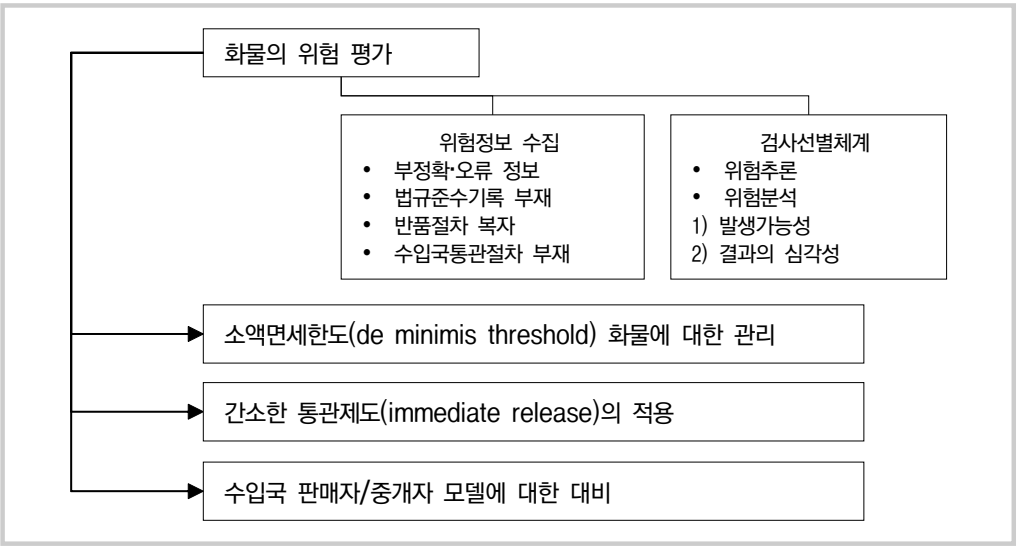

자료: II장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저자작성

이 연구는 질적 연구의 일반적인 연구 결과 분석 방법에 따라 선행 연구에서 반복 제기되는 주장을 코딩하여 패턴을 도출하고, 이 패턴과 대상 사례에서 발견되는 패턴 간에 일치된 양상을 보이면 내적타당성을 확보하였다고 보고 연구결과로 정리했다 (Creswell, 2016). IV장 1절에서는 위험관리기반 전자상거래 수출통관제도를 〈그림 2〉에서 정의한 패턴에 따라 분석한 결과를 작성했고, 같은 장 2절은 〈그림3〉의 분석틀을 적용하여 전자상거래 수출통관 원활화를 위한 위험관리에 있어서 쟁점을 분석한 결과를 작성했다. 이 분석결과를 선행연구들과 매칭시켜 도출한 시사점은 V장 2절에 정리했다.

IV. 위험관리 기반 전자상거래 수출통관 및 쟁점

1. 위험관리 기반 수출통관 제도 사례 분석

1) 화물의 위험평가

(1) 위험정보의 수집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는 수출통관절차를 정식통관과 목록통관 그리고 이어지는 적재관리 절차로 구분하고 있다. 정식통관에서 위험정보의 수집은 수출신고자료와 '구비서류'

를 중심으로 이뤄진다. 수출신고서와 송품장 등 관련서류는 전자적인 방법으로 제출되는데[9], 구비서류의 경우 전자 이미지로 전송되는 경우가 많지만 송품장은 전사적 자원관리(Enterprise Resource Planning, ERP) 시스템을 갖추고 수출입 안전관리우수업체 (AEO) 업체인 경우 관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데이터를 직접 관세청 통관포털로 전송할 수 있다.[10] 수출신고서에서 요구되는 정보는 총 57개로 특히 HS 세번의 입력과 같은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항목은 수출통관 인력이 따로 없는 경우에 올바른 정보를 기입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환급대상이 아닌 물품가격 FOB 200만원 이하의 물품은 위에서 언급된 정식 수출신고서가 아닌 특송업체나 우체국에서 세관에 전송하는 통관목록이나 우편물목록을 통해 위험정보가 수집된다. 이 목록통관 절차에서는 총 17개의 정보가 요구되는데, 수출신고번호가 따로 부여되지 않기 때문에, 반품하는 경우 '재수입면세'를 적용하거나, 수출실적을 인정받거나 환급하는데 제한이 있다.(관세청, 2021)

이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관세청은 27개 신고항목을 필요로 하는 '간이수출신고'와 37개 신고항목이 필요한 '수출목록 변환신고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다. '수출목록 변환신고 시스템'은 2020년 10월 정식 도입되었기 때문에 아직 활용이 제한적이다. 또 이들 절차의 경우 신고하기 위해 신고인 부호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대부분 관세사를 통해 이뤄진다. 2020년 인천본부세관에서 전자상거래수출은 정식수출신고가 969건 (3.7%), 간이 수출신고가 (11.6%), 목록통관이 21,914건으로 (84.6%)로 통관목록으로 신고되고 있다.(수출입기업지원센터, 2021)

2022년 관세법 개정을 통해 전자상거래 쇼핑몰을 운영하는 사업자에게 전자상거래 물품의 주문, 결제 등과 관련된 정보를 수입신고 전에 얻을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11], 수출신고에 관련된 정보를 전자상거래 쇼핑몰 운영자로부터 얻는 절차는 없다. 다만 수출신고에 필요한 수출기업의 송장 데이터를 세관에 전자적으로 전송하는 '전자송장(e-invoice)'는 일정기준을 갖추고 승인 받은 경우 허용하고 있지만[12] 어느 정도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자료는 공개되지 않았다. 특송업체와의 정보는 특송화물 수출신고 프로그램을 통해 세관 시스템과 연계된다.

간이 통관절차(immediate release)를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발송국으로 부터의 사전전자정보의 입수는 우편물 수입통관을 위주로 규정되어 있고[13] 수출통관절차에서의 사항은 규정되어 있지 않다. 요건확인이 필요한 화물은 정식 수출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어, 요건확인기관과의 정보공유는 관세청 통관단일창구를 통해 연계되어 진행되고 있다.

9)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7조 제1항
10)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7조의 2
11) 관세법 제254조 제2항. 2022년 12월 31일 신설
12)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7조의 2
13) 관세법 제256조의2

(2) 검사선별 체계 및 법규준수도에 따른 통제

정식 수출신고가 이뤄지면, 수출업무담당과장이 위험도에 따라 1) 전자통관심사 2) 화면심사 및 서류심사 3) 물품검사로 신고서처리방법을 나눈다.[14] 수출신고된 화물에 대한 검사는 생략하는 것이 원칙이지만[15], 검사대상으로 선별된 경우 이뤄진다. 선별기준은 공개되지 않고 있으나, 최근 2년간 법 위반사실이 없는 외투기업, 월별납부업체,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등 법규준수도가 높은 기업의 경우 선별에서 제외된다.

목록통관의 경우 특송업체나 주기에 따라 지정된 처리담당자가 통관목록 등을 확인하여 검사대상을 선별하는데, 통합위험관리시스템에서 무작위 또는 담당자의 수작업에 의해 선별되는데, 5% 이내에서 특송업체별 성실도에 따라 검사비율을 차등 적용한다.[16]

이러한 전자상거래 수출통관 제도에서 목록통관, 간이신고와 같이 간소화된 신고제도가 중소기업에 적용되기 때문에, 위험정보 파악이나 법규준수 기록이 남지 않는다. 법규준수 관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실질적 위험관리도 한계가 있다.

2) 법규준수도 접근법

서울, 인천, 부산, 대구, 광주 본부세관과 평택직할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를 통해 수출기업에 대한 교육과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다.(서울본부세관, 2021) 그러나 개별 수출통관 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교육은 전자상거래쇼핑몰 운영자, 특송업체 또는 관세사를 통해 이뤄진다. 관세당국에서는 수출화주직접신고 프로그램이나 수출목록 변환신고 시스템과 같이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는 경우 특송사나 관세사를 대상으로 비정기적인 설명회를 개최한다.

법규준수도는 수출업체, 관세사, 보세구역운영인이나 보세운송업자, 화물운송주선업자, 특송업체, 선사, 항공사 등 전자상거래에 참여하는 광범위한 대상을 상대로 평가된다.[17] 평가결과에 따라 간이신고, 검사대상 수출입물품의 선별, 과태료ㆍ과징금ㆍ행정제재 등의 산정 및 감경 등이 적용된다.[18]

업체별 법규준수도는 신고의 정확성, 법령 위반 실적, 협력실적의 3개 분야의 기록을 자동으로 평가하는 '통합법규준수도 평가시스템'을 통해 최근 2년의 실적을 분기별로 평가한다.[19] 수출 신고의 경우 세번부호, 결제금액, 금액, 단가, 보험료, 운임, 중량 및 수량 등에 대한 신고정확도를 오류 비율과 항목별 배점을 곱하여 99점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정한다.[20]

법규준수도 점수는 매 분기 다음 달 20일까지 업체별로 관세청 통관포털을 통해 제공되고,

14)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0조
15)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7조
16)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38조.
17) 통합 법규준수도 평가와 운영에 관한 고시 제4조.
18) 통합 법규준수도 평가와 운영에 관한 고시 제14조.
19) 통합 법규준수도 평가와 운영에 관한 고시 제5조, 제7조, 제8조.
20) 통합 법규준수도 평가와 운영에 관한 고시 제5조, 제7조, 제8조.

업체는 점수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에 대해 관세청의 검토결과는 점수 제공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휴대폰 문자, 전자메일, 팩스, 전화, 문서 등으로 통지하도록 되어 있다. 법규준수도를 정정은 제출된 의견 검토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이의신청, 심사, 심판 등을 통해 청구인의 의견이 인용된 경우 이뤄진다.[21]

2. 전자상거래 수출통관 무역원활화 위험관리의 쟁점

1) 화물의 위험평가

(1) 위험정보의 수집

우편물 수출통관은 신고정보 기반 위험관리에서 가장 취약한 부분으로 보인다. 특송목록과 달리 우편물목록의 제출은 대부분 생략된다.[22] 또한 우체국 통관 시스템에서는 전자상거래 물품에 대한 분류가 없어, 우편물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관리는 물론 전자상거래 수출통계도 집계하기 어렵다. (이석문, 최장호, 2021)

위험정보 수집을 위한 정보공유체계를 수립하는 것은 부정확하거나 오류가 있는 정보를 상호 대사를 통해 보완하는 기능을 한다. 그러나 전자상거래 수출통관에서 위험정보공유체계는 아직 미비한 점이 많다. 특히 우리나라에 국한된 문제는 아니지만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우편 발송 전자상거래 화물에 대한 위험정보가 수집되는 체계가 미약하다. WCO와 만국우편연합(Universal Postal Union, UPU)이 CN22 및 CN23 양식을 도입하여 세관신고양식 통일하기는 했지만 정보가 여전히 수기로 작성되는 부분이 많아 위험관리에 사용하기에는 불충분하다. (WCO, 2015)

수출물품의 신고 수리 후 적재 이행에 대한 위험정보 즉 적재기간이 경과한 화물에 대한 내역은 통관지 세관에서 매주 월요일 통관시스템을 통해 확인한다.[23] 적재이행의무는 이와 같이 위반 후에 세관이 확인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사전적인 위험관리가 어렵다. 수출통관 후 적재의무 위반은 빈번하게 발생하는 위반행위 중 하나로 과태료가 자주 부과되고 있다. (인천본부세관, 2017)

국가 간 사전정보 교환에 있어서는 WCO와 UPU의 협력으로 우편의 경우는 어느정도 제도화되어 있으나, 특송의 경우에는 국내에 제도화된 부분이 아직 없다. 미국의 경우 특송 소액화물에 대한 선적 전 사전 위험관리 데이터를 수집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섹션 321 데이터 시범사업(Section 321 Data Pilot)을 2019년 8월 시작하여 2023년 8월까지 진행 중

21) 통합 법규준수도 평가와 운영에 관한 고시 제11조 ~ 제13조.
22)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42조. 검사가 필요한 경우에 목록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23)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52조. 같은 고시 제45조에서는 수출신고 수리된 물품을 수리된 날부터 30일 이내 적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에 있다. (곽동철, 이지수, 노재현, 이효영, 2022) 이 사업에는 운송인, 관세사, 화물운송주선인, 전자상거래쇼핑몰을 포함한 9개 주요 이해관계자가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아마존이나 쇼피와 같은 미국 전자상거래쇼핑몰 운영자가 이 제도에 참여하는 경우 우리 전자상거래 수출정보는 사전적으로 미국에 제출되는 반면, 우리는 위험정보 수집 절차를 미비하고 있어 향후 전자상거래 정보의 비대칭성이 커질 수 있다.

(2) 검사선별 체계 및 법규준수도에 따른 통제

중소기업의 전자상거래 수출은 간헐적으로 일어나는 경우가 많아 법규준수기록이 남지 않고, 이에 따라 법규준수기록을 바탕으로 이뤄지는 검사 선별 제외 대상이 되기 어렵다. 목록통관의 경우 수출자의 법규준수기록이 남지 않아 무작위 또는 수작업에 의한 검사 대상 선별이 이뤄지고 수출자의 법규준수도에 따른 위험관리가 이뤄지지 않는다. 더구나 수출자의 신고오류를 사전적으로 방지하는 절차가 부족한 현재 통관절차에서 기존 법규준수도 평가 절차가 그대로 적용된다면 중소기업 수출자는 낮은 법규준수도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다.[24]

2) 법규준수도 접근법

전자상거래 수출기업에 대한 교육 및 컨설팅을 제공하는 수출입기업지원센터는 수출보다는 수입업체에 집중한다. 이렇게 제도적인 교육과 컨설팅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중소수출기업이 사적으로 관세사의 전문 컨설팅을 받기도 어렵다. 관세사는 통관금액에 일정 비율의 수수료를 받고 있어서 대부분 소액, 소량, 간헐적인 수출통관을 하는 중소기업을 직접 대행해서는 수익을 남기기 어렵다.[25] 이에 따라 관세사들은 특송사를 통하지 않고 전자상거래 중소기업에 직접 컨설팅을 제공하는 경우가 드물다. 일부 전자상거래 쇼핑몰과 특송사는 품목별 수출통관절차를 웹사이트를 통해 안내하고 있으나 세부 정보를 알기 위해서 수출자가 시행착오를 거치게 된다.[26]

3) 전자상거래 무역원활화 제도의 운영

(1) 소액면세한도 및 간소한 통관제도의 적용

전자상거래 수출자의 대부분은 영세하고 수출입 전문인력이 없어, 거래상대국의 소액면세한도나 간소한 통관제도에 대해 무지하거나, 어느 정도 인지하더라도 정확한 정보를 얻는 방법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더구나 수입국에서 필요한 인, 허가 등 요건 확인 절차에 대한 정보는 더 불확실하다.[27]

---

24) 중소기업 3개사 인터뷰 (2022년 11월 25일)
25) 관세사 2명 인터뷰 (2022년 10월 17일, 20일)
26) 중소기업 3개사 인터뷰 (2022년 11월 25일)

상대국 통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해 수출자가 충분히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물품의 반송확률이 높지만, 목록 통관되어 수출 신고기록이 없는 경우 반송 물품에 대한 재수입 면세가 적용되지 않고 이에 따라 전자상거래 수출의 수익성이 낮아질 수 있다.[28)]

(2) 판매자 · 중개자 징수모델에 대한 대비

판매자 · 중개자 징수모델은 일부 국가에서는 실제로 시도되고 있다. 그러나 이 모델은 중소기업 수출자가 수입국 관세법 준수 의무를 부담하기 때문에 확산이 어렵다. (WCO, 2015) 전자상거래 수출자는 거래상대국의 통관절차 뿐만 아니라 관세징수 후 수입국에 송금해야 하는 이 모델은 다른 언어, 법체계, 거래관행 등 중소기업이 감당하기에 과중한 부담으로 평가되고 있다.

V. 요약 및 결론

1. 요약

이 연구는 중소기업 전자상거래 수출통관을 세관의 위험관리 절차에 중심을 두고 분석하여 전자상거래 수출 원활화를 위한 위험관리 절차에 요구되는 개선점과 시사점을 탐색하는 것을 목표로 수행됐다.

수출통관 위험관리 현황과 쟁점 순으로 분석한 연구 결과를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다. 현재 수출통관 위험정보는 정식 수출 신고에 47개 항목, 수출목록 변환 신고 시스템에 37개의 항목, 간이 수출 신고에 27개 항목, 목록 통관에 17개 항목을 수집하고 있다. 수출기업은 HS 세번과 같은 전문 지식이 필요 없는 목록통관을 선호하지만, 이 경우 반송 물품에 대한 재수입 면세 적용, 수출실적 인정, 환급이 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

입력 오류를 줄이기 위한 전반적인 자동화 및 전산화는 이뤄졌으나, 우편물의 경우 아직 수작업이 많고, 세관과의 정보공유나 전자상거래 수출 통계, 위험정보의 적시 수집이 어렵다. 신고 이후 이뤄지는 적재의무는 위반이 발생한 후에야 확인할 수 있어서 위험 정보 수집이 취약한 부분이다. 향후 중요성을 더할 것으로 보이는 특송물품에 대한 국가 간 사전정보교환 제도는 국내 논의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

검사선별체계는 수출통관에 대한 검사는 생략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검사선별기준에 따라 이뤄지고 있으며 적색, 황색, 녹색 3단계 채널이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목록통관의 경우는 개별 수출기업에 대한 법규준수도 기록이 없어서 특송업체의 성실도나 무작위 선별 방법에

27) 중소기업 3개사 인터뷰 (2022년 11월 25일)
28) 중소기업 3개사 인터뷰 (2022년 11월 25일)

따라 검사가 이뤄진다.

통관절차에 대한 교육은 법규준수도 개선에 중요하지만 전자상거래 수출기업을 직접 대상으로 한 통관절차 교육은 매우 드물다. 전자상거래 수출기업이 법규준수도 평가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적지만 된다고 하더라도 신고의 정확성을 주요 평가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높은 평가를 기대하기 어렵다. 관세사의 조력은 중소 전자상거래 수출기업의 법규준수도에 중요하지만, 현재 수수료 체계에서 전자상거래 수출 중소기업은 양질의 지속적인 관세사 서비스를 받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2. 관세행정을 위한 시사점과 개선점

수출통관 위험관리 현황과 쟁점을 분석하면서 중소기업이 법규준수 역량을 쌓아가도록 이끌어 주는 '법규준수도 접근법'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에 주목하게 됐다. 중소기업에게 전자상거래는 '소수 인원'으로도 수출할 수 있어 비용을 절감하는 장점이 있지만, 이 '소수 인원'의 장점은 곧 수출 담당 인력의 부족이라는 부메랑이 된다. 이 때문에 중소기업은 수출통관과 상대국의 수입통관에 필요한 지식과 경험, 법규준수도를 쌓을 수 없고, 전자상거래 수출은 정보 오류와 실수로, 그리고 수익보다 큰 비용으로 작용할 위험이 된다.

이러한 위험을 최소화하고 관리하려 해도 중소기업은 소량, 소액 수출이라는 구조적인 한계와 전문 지식을 보유한 관세사 서비스로부터의 소외를 경험하곤 한다. 이러한 내재적인 역량 한계와 구조적인 지원체계 결함의 이중고는 법규준수 실패의 위험을 높힌다. 이것은 곧 관세행정 당국이 중소기업 전자상거래 수출통관 원활화에 장애로 작용한다.

수출통관 위험관리는 오랫동안 수입통관 보다 관세 당국의 관심을 받지 못했지만, 관세징수가 이뤄지지 않고 요건 확인이 필요한 품목도 적어서 당연하게 여겨져 왔다. 더 근본적으로 수출 전문인력을 보유한 대기업이 수출을 주도해왔기 때문에 상대국에서 필요한 법적 요건을 갖추거나 반품과 같은 고객서비스에 필요한 절차를 수립하는데 관세 당국의 지원과 관심이 크게 필요하지 않았다.

그러나 전자상거래 수출은 중소기업이 주도한다는 점에 관세 당국은 주목하여야 하며, 위험관리도 변화되어야 한다. 특히 선진국부터 도입이 확대되고 있는 판매자/중개자 징수모델은 수입국 법규준수의 책임은 물론 관세징수와 납부 책임을 궁극적으로 수출자에게 지운다. 이 모델이 실현된다면 중소기업이 전자상거래 수출에서 부담해야 할 위험은 한층 가중될 수 있다. 즉 국내 수출통관과 상대국의 통관과 관련하여 중소기업이 부담하는 위험을 근본적으로 관리하지 못한다면 전자상거래 수출시장마저도 이들에게 불리하게 기울어진 운동장이 될 수 있다.

물론 이 밖에도 전자상거래 수출통관은 우편통관 정보가 세관과 적절하게 공유되지 않고 여전히 수작업으로 이뤄지고 있고, 적재이행 관리가 어렵고, 국가 간 특송화물에 대한 사전

정보 교환에 대비가 되어 있지 않은 등 다양한 '위험 정보 수집과 파악'의 문제가 있다. 디지털화, 네트워크화와 같은 기술 도입과 수용이 이뤄져야 하지만, 그와 동시에 특송사, 전자상거래 업체, 은행 등 세관이 기존의 위험관리에 필요했던 것보다 더 광범위한 이해관계자들과의 정보공유와 협력체계가 구축되어야 해결될 수 있는 문제다. 지면의 한계로 이 연구에서는 깊이 다루지 못했지만, 전자상거래 수출 원활화를 위한 세관의 협력 문제는 향후 연구에서 다루고자 한다.

사람들이 어떤 선택을 할 때 가장 좋은 결정을 내리도록 유도하는 행동경제학의 '넛지(Nudge)'는 무역 원활화의 문제를 위험관리를 바탕으로 풀어가는 기초가 됐다. (Sunstein and Thaler, 2018) 자발적인 법규준수를 유도하는 위험관리 체계는 중소기업의 전자상거래 수출을 활성화하는 데에 무엇보다 필요하다. 단순히 신고 오류를 기초로 수출통관 위험관리를 한다면, 중소기업 전자상거래 수출은 통관 원활화의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희박하다.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위험추론 과정에 따라 (Widdowson, 2005) 무역환경에서 중소기업 수출자의 행동과 심리, 선택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며, 예측 가능한 행동 패턴을 기반으로 선택을 유도해야 한다. 예를 들어, 관세사가 수출 중소기업에 제공할 수 있는 컨설팅을 수준별로 나누고, 컨설팅 수행 횟수와 정도에 따라 관세사의 누적 오류점수를 덜어 준다든지, 수출통관 교육이나 관세사 컨설팅을 받은 중소 수출기업에게 협력실적 점수를 부여하는 것과 같이 다양한 '넛지'를 연구하고 위험관리에 도입해가야 한다.

결론적으로 관세 당국이 중소기업 전자상거래 수출통관 원활화에 실패할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이 수출과 상대국 시장에서 겪는 애로에 관한 깊은 관심과 이들이 부담하는 법규준수 실패 위험에 대한 새로운 추론 방법의 개발, 이에 근거한 법규준수도 접근법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곽동철, 이지수, 노재현, 이효영(2022),「글로벌 디지털 통상 협상 동향연구: 관세협력 및 관세제도 개선 방향」, 세종시: 기획재정부.

관세청(2020), 관세용어사전. (2022. 10. 15.),「관세청 웹포털」Available at https://www.customs.go.kr/

관세청(2021),「전자상거래 수출전용 수출목록 변환시스템 - 정보연계방식의 간편수출신고」, 대전시: 관세청.

서울본부세관(2021),「'21 년도 중소기업 주요지원사업」, 대전시: 관세청.

수출입기업지원센터(2021),「UNI-PASS를 활용한 전자상거래 수출신고 가이드북」, 대전시: 관세청.

이석문, 최장호(2021), “국경 간 B2C 전자상거래 수출통관서비스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무역연구」, 17(5), pp. 293-313.

이은재, 이지수(2021), 「4차 산업혁명 시대 무역원활화 제고를 위한 싱글윈도우 개선방안 및 시사점」, 세종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인천본부세관(2017), 「세관장이 부과하는 과태료・과징금 사전」, 인천시: 인천본부세관.

한국무역통계정보포털(2022), 중소기업 통계, (2022. 10. 15), Available at https://www.bandtrass.or.kr/theme/ecommerce.do?command=THE005View&viewCode=THE00501

Aven, T.(2017), “Improving risk characterisations in practical situations by highlighting knowledge aspects, with applications to risk matrices,” *Reliability Engineering and System Safety*, Vol.167(May), pp.42-48.

Barnay, A., Davis, J., and Zaidi, S.(2022), “Can e-commerce help customs agencies fix old problems?,” *McKinsey & Company*, (Issue August).

Creswell, J. W.(2016). *30 Essential Skills for the Qualitative Researcher* (2nd ed.), SAGE Publications Inc.

Elliott, D.and Bonsignori, C.(2019), “The Influence of Customs Capabilities and Express Delivery on Trade Flows,” *Journal of Air Transport Management*, Vol.74, pp.54-71.

Geourjon, A. M., and Laporte, B.(2005), “Risk management for targeting customs controls in developing countries: A risky venture for revenue performance?,” *Public Administration and Development*, Vol.25 No.2, pp.105-113.

Golovko, E., and Valentini, G.(2011), “Exploring the complementarity between innovation and export for SMEs growth,” *Journal of International Business Studies*, Vol.42 No.3, pp.362-380.

Kim, H.(2022), 「Highest Records ever in SMEs' Export」 NewsPim

Neufeld, N.(2014), “The long and winding road: How WTO members finally reached a trade facilitation agreement”, *WTO Staff Working Paper*, ERSD-2014-06.

Power, M.(2004), “The risk management of everything,” *Journal of Risk Finance*, Vol.5 No.3, pp.58-65.

Roy, J.(2005), 「Key Issues in Trade Facilitation. Summary of World Bank/EU Workshops in Dhaka and Shanghai in 2004」, World Bank Working Paper WPS3703.

Song, B., Yan, W., and Zhang, T.(2019), “Cross-border e-commerce commodity

risk assessment using text mining and fuzzy rule-based reasoning," *Advanced Engineering Informatics*, Vol.40, pp.69-80.

Sowinski, L. P. C.(2017), "WCO Immediate Release Guidelines State of Application in CEFTA," *Global Trade and Customs Journal*, Vol.12 No.5, pp.196-202.

Staples, B. R.(1998), 「Trade Facilitation」, Geneva:World Bank.

Taneja, H.(2013), "Economies of Unscale: Why Business Has Never Been Easier for the Little Guy," *Harvard Business Review*

Tavengerwei, R.(2018), "Using trade facilitation to assist MSMEs in E-commerce in developing countries,"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 Law*, Vol.21 No.2, pp.349-378.

Thaler, R. H.(2018), "Nudge, not sludge," Science, Vol.361 No.6401

United Nations(2012), 「Trade Facilitation Implementation Guide」, New York: United Nations.

Walkenhorst, P., and Yasui, T.(2009), 「Quantitative assessment of the benefits of trade facilitation. In Overcoming Border Bottlenecks: The Costs and Benefits of Trade Facilitation」, Paris:OECD.

WCO(2012), 「WCO Customs Risk Management Compendium」, Brussel:WCO.

WCO(2015), "Focus: E-commerce and revenue collection," *World Customs Organization News*, Vol.78, pp.38-43.

WCO(2017), *WCO Study Report on Cross-Border E-Commerce*, Brussel: WCO.

WCO(2018a), *Guidelines for the Immediate Release of Consigments by Customs*(Ver.III), Brussel: WCO.

WCO(2018b), Immediate Release Guidelines, Retrived January 15, 2023, from https://www.wcoomd.org/en/topics/facilitation/instrument-and-tools/~/link.aspx?_id=D56283E7054F4694B808049CE03A3756&_z=z

WCO(2022), *Framework of Standards on Cross-Border E-Commerce*, Brussel: WCO.

WCO and WTO(2022), *WCO/WTO Study Report on Disruptive Technologies* (Issue June), Geneva: WTO.

Widdowson, D.(2005), "Managing Risk in the Customs Context", In L. De Wulf and J. B. Sokol (Eds.), *Customs Modernization Handbook* pp. 1-356). Washington D.C.:The World Bank.

Wilcox-daugherty, L., Waite, V., and Barry, K.(2018), *Customs Modernitation Handbook; Applying Risk Management in the Cargo* (Issue July).

Washington D.C.: the U.S.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Wilson, J. S., Mann, C. L., and Otsuki, T.(2004), *Assessing the Potential Benefit of Trade Facilitation: A Global Perspective*, World Bank Policy Research Working Paper, No. 3224. Washington D.C.:The World Bank.

WTO.(2018), *World Trade Report 2018 - The future of world trade: How digital technologies are transforming global commerce* (Vol. 7, Issue 04), Geneva: WTO.

Trade Facilitation for SME's E-Commerce Exports - focusing on Customs' risk management

Ji-soo Yi

Abstract

This research aims to examine and reevaluate the risk management procedures required for facilitating E-Commerce exports by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SMEs) in the context of customs risk management procedures. Based on risk management studies, this research focuses on three research questions. First, what courses comprise the export risk management structure? Second, what are the key issues in risk management in facilitating E-Commerce export clearance? Third, based on the research results, what are the implications and improvements for export customs risk management in boosting SMEs' E-Commerce exports?

The research concluded that risk control for SMEs' E-Comerce exports should be further strengthened based on a compliance management approach. To achieve this, the customs authorities should develop a new method of reasoning about the difficulties SMEs face in exporting and the risks of failure to comply with the regulations at the foreign markets.

〈Key Words〉 E-Commerce, SMEs, export clearance, risk management, compliance management